

문서번호	기획조정실-4136
보존기간	5년
결재일자	2020.06.25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71호

★대리	팀장	기획조정실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
협 조				

---

## 공단 표준 수입계약서 개정 보고(2020)

---

2020.

# 공단 표준 수입계약서 개정 보고 (2020)

---

## □ 개정사유

- 공단 수익시설 사용자(고척돔 외부매점)가 **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** (2020약관0972)하여 공단이 대응한 바 있음(2018.12. ~ 2020.5.).
  - 청구 취지 : 공단의 **공유재산 유상사용·수익허가서가 불공정**하다는 취지
  - 사건 결과 : **심사절차 종료** (약관심사과-1156)
- 위 사건 진행 중 공단은 **2019년에 표준 수입계약서 개정**을 통한 자진시정 완료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절차 종료를 이끌어냈음.
  - 표준 수입계약서 개정 보고(이사장 방침 제152호(2019.11.08.))
- 다만, 개정된 2019 표준수입계약서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진시정 하도록 **추가로 권고안을 제시**하여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- 이번 개정의 목적은 수익시설에 대한 **공단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**하는 것으로, 2019년 표준 수입계약서를 보완하여 **불공정·불합리한 수입계약의 가능성을 차단**하고 **궁극적으로 공단의 종합청렴도 향상에** 기여하고자 함.

## □ 그간 추진사항

-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청구 접수 ..... 2018. 12.
- 2019 표준수입계약서 개정 ..... 2019. 11.
- 개정 2019 표준수입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송부 ..... 2019. 11.
-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자진시정 권고 ..... 2020. 4.
- 추가 자진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송부(돛경기장운영처-3139) ..... 2020. 5.
-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결과 통지(약관심사과-1156) ..... 2020. 5.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※ 행정재산 사용·수익 허가조건을 기준으로 작성

### ① 관리비 및 대여료 산정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산출기준 명시

(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서 특약사항 안 제1조, 제2조 제1항)

- 근거: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, 공정거래위원회 ‘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’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등

구 분	현 행	개 정
관리비	관리비 항목 별 산출기준 없음	관리비 항목 별 <u>산출기준을 명시</u>
대여료	공단이 산정한 기준에 따름	<u>공단이 사전에 서면으로 제시한 대여료 수준</u> 에 따르도록 규정

### ② 사용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납부 부담 완화

(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서 안 제10조 제2항, 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서 특약사항 안 제2조 제3항)

- 근거: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, 공정거래위원회 ‘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’ 제10조 제2항 등

구 분	현 행	개 정
허가재산 비용 부담	사용인이 허가기간 중 허가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	<u>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인이 허가재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</u> 관리비 등 면책 가능
대여료 납부	사용인이 허가기간 중 허가재산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어떠한 사유를 불문하고 대여료를 부담	<u>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인이 허가재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</u> 대여료 면책 가능

### ③ 공단의 책임 강화

(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서 안 제15조 제2항, 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서 특약사항 안 제5조 제2항)

- 근거: 약관법 제7조 제1호,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등

구 분	현 행	개 정
사용·수익 허가 취소 요청	허가취소 요청으로 인한 취소시 사용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, 사유 불문하고 공단 면책	<u>공단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용인의 손해에 대해서만 공단 면책</u> 가능
허가재산 내의 출입권한	공단 출입조치로 인한 사용인 손해발생시 공단 면책	사용인의 손해가 <u>공단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공단 면책</u> 가능

④ **사용인에게 과도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완화**

(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서 안 제18조 제2항)

- 근거: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등

구 분	현 행	개 정
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	사건·사고·손실에 대해 <u>사용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</u> 책임 면책	<u>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·사고·손실에 한하여</u> 책임 부담

⑤ **사용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수정**

(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서 특약사항 안 제3조)

- 근거: 약관법 제10조 제1호, 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1항 등

구 분	현 행	개 정
허가재산의 변경	공단과 사용인은 <u>협의</u> 하여 사용·수익허가 내용을 변경	공단과 사용인은 <u>합의</u> 하여 사용·수익허가 내용을 변경

□ **향후계획**

○ 이사장 방침 후 전 부서 배포 및 시행

- 시행일: **2020년 7월 1일** 이후 입찰 공고부터 적용

-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은 그대로 유지, 종전 계약서대로 업무 수행

○ 개정 표준 수입계약서 교육 시행(하반기 중)

[붙임문서] 1. 표준 수입계약서(안) 주요 개정사항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2. 사용·수익 허가조건(안), 대부계약서(안) 및 각 특약사항(안)1부.

[관련문서]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결과 통지 전달 1부. 끝.